

# 누구냐 냐? 꼭 알아야 하는

## -지적 재산권 제대로 알기

### I. 지적 재산권의 정의

#### 1. 정의

지적 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총칭하며, 산업 활동과 관련된 사람의 창작물이나 창작된 방법에 대해 인정되는 독점배타적인 권리로서 무체재산권의 일종이다.

종류	정의와 대상	
특허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으로서, 그 보호 대상은 (i)물건의 발명, (ii)방법의 발명 및 (iii)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이다.	
실용신안	고안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의 창작으로서, 그 보호 대상은 물건에만 한정된다.	
디자인	디자인은 물품 또는 물품의 부분의 외관에 관한 시각적인 디자인을 보호 대상으로 하며, GUI(Graphic User Interface)도 디자인의 대상이다	
상표	상표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표장, 예컨대 삼성전자-애니콜R
	서비스표	서비스업(광고업, 통신업, 은행업, 운송업, 요식업 등 영역의 제공업무)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예컨대, KTF-비기R)

#### 2. 지적재산권의 속성

지적재산권은, 타인의 위법한 모방으로부터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새로운 창작에 대하여 그 창작자에게 일정기간동안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에 그 창작을 일반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누구나 그 창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술의 진보와 산업의 발전을 동시에 추구한다.

### II. 지적 재산권의 중요성

#### 1. 시장에서 독점배타적 지위 확보

노키아, 에릭슨, 모토로라, 인텔, 도시바, 후지쯔, 샌디스크 등과 같은 선진 외국 기업은 특허권과 같은 독점 배타적인 무체재산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하는 동시에 후발 기업의 시장 진입을 방지하고 시장에서의 퇴출을 유도한다.

#### 2. 특허분쟁의 예방

자신의 발명을 적극적으로 특허출원하여 권리화함으로써 타인과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A기업이 특허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B기업을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할 경우, 오히려 A기업은 B기업으로부터 더 많은 특허침해소송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A기업은 B기업을 상대로한 특허침해소송의 제기예 신중해진다. 또한, 특허침해소송이 제기된 경우라도, A기업과 B기업은 서로 크로스-라이선스(cross-licence)를 체결함으로써 특허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

#### 3. 특허는 기업생존의 무기

어떤 대기업에는 “NO PATENT NO FUTURE”라는 슬로건이 있다. 현재의 수출기업의 시장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이고 일본과 미국 등의 선진 외국 기업들이 자신들의 생존을 위하여 전방위





윤재석 변리사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기/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프라임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업무 범위는 반도체 / System LS회로, 통신/인터넷/보안관련기술, BM, 게임, 반도체 장비, 바이오 및 화학 등이다.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 전문위원을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는 한국전자산업진흥회 특허지원센터 전문가 POOL 전문위원을 맡고 있다.



법률사무소 윤재석 (oon@primepat.com) 02-565-0857

적인 특허공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특허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는 수출기업은 국제적인 특허분쟁에서 생존하기 어렵다. 한가지 예로, 미국의 로펌사이에서 한국의 수출기업은 딥 포켓(Deep Pocket: 배상 여력이 큰 상대)으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특허사냥꾼들의 좋은 표적이 되어 무분별한 크고작은 특허분쟁에 휘말리고 있다. 즉, 특허를 갖고 있지 않은 기업은 특허분쟁이 발생할 때 자기 기업을 적절하게 방어할 수 있는 무기가 없다. 무기가 없는 경우 고액의 배상액이나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

### III. 특허제도 개요

#### 1. 특허제도의 목적

특허제도는 기술공개에 대가로서 일정기간 독점배타적인 특허권을 부여하여 발명을 보호하고 장려함으로써 국가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즉, 특허제도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의 획득을 전제로 자기의 기술을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남에게 알리는 교묘한 제도로서, 현대문명은 특허제도와 함께 발전했다고 말할 정도로 기술문헌의 99% 이상이 특허기술이다.

#### 2. 특허요건

특허요건이란 발명이 국가로부터 독점 배타적인 특허권을 받기 위하여 출원 발명이 갖추어야 할 법정요건을 말한다.

- (1) 출원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이를 "산업상 이용가능성"이라 한다).
- (2) 출원발명은 출원하기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선행 기술)이 아니어야 한다(이를 "신규성"이라 한다).
- (3) 출원발명이 선행기술과 다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이를 "진보성"이라 한다).

#### 3. 특허권의 효력

특허권은 특허권을 획득한 국가 내에만 그 효력을 발생하고,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이다.

#### 4. 선출원주의와 선발명주의

- (1) 선원주의는 동일한 발명이 2건 이상 출원되었을 때, 발명이 이루어진 시기에 관계없이 특허출원일을 기준으로 특허청에 먼저 출원한 발명에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 (2) 선발명주의는 동일한 발명이 2건 이상 출원되었을 때, 특허출원의 순서와 관계없이 먼저 발명한 출원인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써, 현재 미국만이 운영하는 제도이다.

#### 5. 심사청구제도

- (1) 모든 특허출원을 심사하는 대신에 출원인이 심사를 청구한 특허출원에 대해서만 심사를 하는 제도로써, 특허출원일로부터 5년 내에 심사를 청구하지 않으면 그 특허출원은 취하로 간주한다.
- (2) 우선심사청구제도는 벤처기업의 특허 출원에 대하여 일정요건 하에서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는 제도이다. 이 경우, 특허등록여부는 출원일로부터 4~6개월내에 알 수 있다.

#### 6. 출원공개제도

- (1) 출원공개제도는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6월이 경과하면 그 기술내용을 특허청이 공보의 형태로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제도로써, 심사가 지연될 경우 출원기술의 공개가 늦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출원공개 후, 제3자가 공개된 기술내용을 실시하는 경우 출원인은 그 발명이 출원된 발명임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으며, 경고일로부터 특허권 설정등록일까지의 타인의 실시에 대한 보상금을 특허권획득 후에 청구할 수 있다.
- (2) 조기공개제도는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6월이 경과되기 전이라도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출원공개하는 제도이다.